

1

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!

최대 3점, 부부합산 최대 17점까지 가능 (※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점수 합산 불가)

2

부부 한정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!
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할 경우 가능 (※ 단, 선접수 유효, 후접수 무효, 부부 외 세대원 중복 청약 시 부적격)

3

2세미만 자녀 우선 공급!

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2세 미만 자녀 우선 공급 (※ 태아, 입양 자녀 포함)

4

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!

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, 주택소유 배제 ※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 소유 횟수 제한 無

5

[혼인특례] 본인의 혼인 전 과거 당첨이력 배제!

신혼부부 - 본인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※ 본인 기준 1회 한정

6

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완화!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가능 ※ 자녀 있을 시 1순위, 무자녀 2순위

7

신혼부부·다자녀·노부모부양 출산특례 신설!

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(임신, 입양포함) 자녀가 있으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한정
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 있을 경우 가능 (※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)

8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자녀로 기준 완화!

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※ 임신, 입양 포함

9

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3조 9호 나목

[비 아파트] 전용면적 85㎡ 이하,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간주 ※ 단독, 연립, 다세대주택, 도시형생활주택 등 해당